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613호

나. 발 의 자 : 이종배 의원(찬성자 41명)

다. 발의일자 : 2023년 3월 29일

라. 회부일자 : 2023년 4월 3일

2. 제안이유

- 코로나19 관련 규제가 해제되어감에도 지역 내 학교 체육시설 개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바,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건강증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, 관내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시 개보수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, 학교 내 다양한 시설 확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- 또한 생활체육포털 운영을 통한 공공체육시설 정보 접근성 강화를 조례에 명시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체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체육시설 홍보에 관한 운영 지원을 명시함(안 제16조제8호 신설)
- 관내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시 개보수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, 학교 내 다양한 시설 확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(안 제18조제5항 신설)

4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주우철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서울시내 초·중고 학교 체육시설의 유휴시간대 지역주민 개방을 통해 인근 지역 주민 생활체육시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등 학교시설 이용률을 제고하고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음.

나. 학교 체육시설 개방사업 현황

- 서울시는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개보수를 지원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·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.
- 서울시 관내 학교 체육시설을 2년 이상 개방하는 조건으로 초·중고 운동장(토사, 잔디), 트랙(우레탄), 스탠드, 부대시설이나 체육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1개소당 5천만원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, 최근 3년간(2020년~2022년) 약 146개 학교에 개보수를 지원하였음.

<학교 체육시설 개방사업 현황>

- 지원대상 : 서울시 소재 학교(초·중·고)
 - 운 동 장 : 운동장(토사, 잔디), 트랙(우레탄), 스탠드, 부대시설 개·보수
 - 체육·기타시설 : 체육관(강당) 및 체육관 내 운동시설, 부대시설 개·보수
 - ※ '23년도 지원항목 확대 : 체육활동 관련 부대시설 개·보수 추가
- 지원조건 : 지역주민에 학교체육시설 이용 개방(2년 이상)
- 지원내용 : 개방 예정 대상 학교체육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
- 지원기준 : 개소당 50백만원 내외
- 심사방법 : 정량평가(서류심사 1차), 정성평가(심의위원회 평가 2차) 병행
 - ※ 체육시설, 교육시설, 생활체육 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
- 소요예산 : 2,350백만원
 - ※ '23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방 이양되어 예산 전액 시비로 편성됨

다. 생활체육시설 정보 접근성 강화(안 제16조제8호 신설)

- 개정안은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관내 체육시설 등 생활체육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.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16조(생활체육의 진흥)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의 권장·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 1. ~ 7. (생 략) <u><신 설></u> | 제16조(생활체육의 진흥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 <u>8.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관내 체육시설 등 생활체육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</u> |

- 서울시는 2019년부터 생활체육 홍보 마케팅 채널을 운영하며 시 생활체육 정책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음. 또한 2021년부터 생활체육 종합정보 시스템을 개발하여 생활체육 대회, 행사, 프로그램 정보 안내, 콘텐츠 홍보 및 확산, 공공체육시설 지도기반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.
- 기존에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웹사이트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가 절대적으로 낮아 활용도가 미미한 것으로 보임.
- 따라서 시민들에게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‘생활체육 정보 제공’을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생활체육 홍보 마케팅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라.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 근거 신설(안 제18조제5항)

- 개정안은 주민개방을 조건으로 학교 체육시설 개·보수를 지원하고, 시장이 관내 학교의 다양한 체육시설을 확충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(제35조제2항)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개방·이용되는 학교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·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.
- 서울시는 “2023년 학교 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” (시장방침)을 통해 생활체육시설을 위한 가용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 관내에 학교부지를 활용하여,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하고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음.
- 이는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지

원해 운동장과 체육관 시설이 절실한 시민들에게 지역사회 네트워크 역할과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판단됨.

- 다만 학교시설 이용자들의 음주, 흡연, 취사행위, 폭력 등 학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 등과 사용료의 합리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해 보임.

**의안번호
613**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발 의 | 제 안 자 이종배 의원 (문화체육관광위원회) | 제안일자 2023. 3. 29. | 소관 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주요내용 | <p><제안이유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관내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시 개보수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○ 생활체육포털 등의 운영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체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 마련 <p><주요요지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시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체육시설 홍보에 관한 운영 지원 조항 신설(안 제16조의8) ○ 지역주민에게 개방·이용되는 관내 학교의 체육시설 관리·보수에 필요한 경비 지원 조항 신설(안 제18조의5) | | |
| 추진경과 | <p>○ 2023. 3. 29. 이종배 의원 발의 - (찬성) 강석주, 김규남, 김동욱, 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김원중, 김재진, 김지향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김혜지, 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 민병주, 박성연, 박영한, 박환희, 서상열, 송경택, 신동원, 신복자, 아이수루, 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 유정희, 윤기섭, 윤영희, 이봉준, 이상욱, 이종태, 이종환, 이효원, 최민규, 최윤희, 최진혁, 허 훈, 홍국표</p> | | |
| 부 서 검토의견 | <p>원안가결 (0) / 수정가결 () / 부결() / 보류()</p> | | |
| 쟁점사항 (의회동향, 문제점 등) | <p>○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 및 방침에 근거하여 추진되던 사업을 사업의 타당성 제고 및 활성화 유도를 위해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에 동의함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※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(보조)</p> <p>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·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·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</p> <p>※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(국가 등의 책무)</p> <p>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/div> | | |
| 대응방안 | <p>○ 해당없음</p> | | |
| 담당부서 | 체육진흥과 | 팀장 송홍규(☎2133-2743) | 담당 이은빈(☎2133-2743) |